

社會民主化와 大學 運營의 自律化

柳初夏

(忠北大 哲學科)

1. 大學 自律化는 社會 民主化 運動의 한 부문

민주주의는 법제상 평등한 지위를 누리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에 기초한, 가능한 최대한의 합의에 따라 사회 공동체를 운영한다는 원리이다. 인류사의 현대적 발전은 자유 민주주의를 국가 사회의 운영 원칙들중 보수적인 것으로 규정하게 하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 권력 기관이나 이론바 지도자들의 권위보다 구성원 일반의 여론을 절차적·형식적 측면에서 우위에 두는 방법적 원칙이다. 방법상의 원칙을 거스르는 어떤 실질적·내용적 발전도 자유 민주주의는 명백히 부정한다. 자유 주의 및 보다 진보적인 형태의 모든 민주주의는 국가 사회 각 분야에서의 자율을 생명으로 한다.

대학의 민주화·자율화는 대학의 양대 주체 집단인 교수와 학생, 그리고 합리적·효율적인 교육·수업을 위한 일체의 정책 실무를 관장하는 총·학장 이하 행정 기관 종사자 등 모든 대학인이 공동으로 떠맡아야 할 과제이다. 대학의 1차적 기능인 교육을 자율적·민주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의 일차적·중심적 주체인 교수들의 일 뜻이다. 한편 대학의 사회적 위치, 곧 대학과 일반 사회의 역동 관계에서 볼

때 대학의 자율화는 교수를 비롯한 대학인에게만 부과되는 과업이 아니다.

최근 권력의 동향과 정책 당국의 처사만 보더라도 대학의 자율화가 기득권을 지닌 권력과 금력의 반민주적 집념에 의해 얼마나 치쳐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사립학교 재단의 비인간적 횡포와 비리, 일부 총·학장의 비교육자적 행태 등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인 처사들의 사례는 이미 알려진 것만으로도 몇 편의 베서를 이를 만하여, 교수와 학생에 대한 은밀한 탄압과 사무적 업무 처리의 오용을 통한 재정 비리는 실상 적지 않은 대학에 공통적으로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6·29 이후 6공화국의 체제 정비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부조리에 대한 당국의 적실성 있는 조치는 아직 취해진 바 없으며, 교육 민주화·대학 자율화를 실천적으로 주장했다는 이유로 부당 불이익을 당한 양심적 대학인들의 정당한 권리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권력 당국의 일부 정책 입안자나 재단 등 보수 세력은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지속적으로 옹호·관철하려는 4·5공화국적 발상과 의지를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내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그 내용이 반민주적이고 시대 역행적이라는 점만으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거부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더욱

문제인 것은 6공화국의 성립에까지 이르도록 한 국민 대중의 民主化 의지와 대학인의 自主 의지를 철저히 외면한 그 통과 과정의 어두운 비밀주의이다. 국민 여론은 물론 교육의 당사 주체인 교수들의 일반적 의견까지를 무시하고 재력 있는 소수 집단의 입장을 반영하는 교육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정부·여당은 물론 민주화의 정치적 주체임을 자처하는 야당들조차 교육 민주화 운동 단체들에게는 교육 관계법 개정을 위한 3당 단일법안 제출을 약속해 놓고 실제로는 사립학교 재단총회로비 공세에 기우뚱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학의 자율성이 어떻게 확보되어야 하며 확보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똑바로 알려주는 현상이다. 학원 문제는 정치·경제적 역동 구조 속에 놓여 있고, 그런 만큼 학원 자율화는 전반적인 사회 민주화의 구성적 요소로서만 성취된다. 끈질긴 반민주적 보수성을 지닌 권력 당국에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大學 自律化를 이루려는 運動은 民主化를 향한 대학 내부 집단 간의 혁연한 합의, 초·중등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운동들과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반민주 잔재의 척결을 요구하는 국민적 실천과의 연대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결국 학원 민주화·교육 자율화를 이룩하려는 실천 활동들은 동시에 사회·정치적 민주화를 향한 현실 운동이어야 한다. 교육 민주화 운동은 학원의 올타리 안에 스스로를 제한시킬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적 영역에까지 자신을 개입시켜야 한다. 가장 좁게 규정하더라도 대학 민주화 운동은 사회 민주화라는 큰 과제 가운데 대학인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시대 상황이 부여하는 일몫이며, 나아가 권력·금력·분단 이데올로기가 뒤엉킨 시대 사회의 총체적 모순을 극복하는 변혁 운동에 그 구성적 요인으로 참여해야 한다. 학원 자율화는 정치적 민주화와 마찬가지로 그 중심 주체들이 억압적 구조와 싸워 나감으로써 획득해낼 수밖에 없다. 각종 사회 집단이 토론, 경쟁, 투쟁을 통해 스스로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고 사회 전반의 합리성 수준을 고양시켜 나가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이념의 관점에서 보더

라도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2. 教授 代議 기구의 合法的 制度化는 大學 民主化의 핵심

대학의 현 상황과 교육의 일반 원칙에 비추어 전반적 대학 자율화의 1차적 주체는 교수이다. 대학 자율화·교육 민주화에 있어서 교수 일반의 의견은 부분적으로 반영되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공동 의사로 인정되어야 한다. 교수들의 합의는 대학 사회 운영의 참고 사항이 아니라 정책 근간이어야 한다. 여기서 교수 일반의 공동 의사로 대표하는 대의 기구의 제도적 가능 수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구체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 심의와 의결은 적정 규모의 대의 기구를 통해서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민주주의가 일반적으로 직접 민주주의 아닌 간접 민주주의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대학 운영 일반의 주요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그에 따른 시의 적절한 대학 당국에의 현실적 대응을 위해서는 교수 일반의 의사로 정당하게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되어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이 고루 배합을 이룬 형태의 교수 대의 기구의 활성화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현재 전국의 백 개 넘짓한 정규 대학(교) 가운데 반 수가 넘는 약 60 개 대학에서 회칙·규약·정관을 지난 교수 대의 기구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교수협의회, 평교수협의회, 교수회 등으로 그 명칭과 구성 형태는 대학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각 대학이 교수평의회로 불리는 교수 대의 기구로 하여금 대학 운영의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거의 같다. 이들 교수평의회는 단과대학별 자주·자율성과 대학교 전체 교수단에서의 대학별 구성 비중을 적절히 배합한 기준에 따라 단 대별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 대표성과 전문성이 조화된 조직 구성을 이루고 있다. 이들 교수평의회의 활동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 분위기를 따라 가는 것이면서 또한 복동우는 흐름이다. 목포대, 전남대, 강원대, 연

세대, 조선대 등의 총장 선출과 이들에 대한 문교부의 취임 승인만 보더라도 이제 교수평의회는 합법적 대의 기구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대학의 문제를 풀어 나가는 교수평의회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 당국의 처사는 6공화국 출범 이전부터 줄곧 천명해 온 민주화 의지 자체를 거짓된 것으로 고백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합의하고 있는 교수평의회의 제도적 활성화를 통한 대학의 자주성 회복과 자율 체제 확립의 요구를 외면하고 권력과 직·간접적 연관 속에 놓인 인사들을 포함하는 대학평의원회의 일괄 도입을 시도하는 정부 당국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명목상의 변화의 그늘에서 여전히 대학을 부당하게 규제·감독·조종하겠다는 속셈을 환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정책 당국이 대학을 비민주적 권력의 구미에 맞게 통제하는 데에는 다양한 관점의 비판의식을 지닌 교수들의 대의 기구보다는 기업가적 이해 관계에 몰두하는 재단이나 개인적 안락과 지위를 탐하는 일부 학원 행정 책임자를 상대하는 것이 훨씬 손쉬울 것은 명백하다. 그러한 근시안적 사고 방식은 실상 권력의 편에서도 장기적·원칙적 관점에서는 더욱 유리하고 안정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교수들의 행정 책임 분담 장치를 두려워하고 불신하는 태도로 나타난다. 최근 문교부가 밝힌 학내 소요·분규가 있는 대학의 신규 총·학장 취임 승인 거부 방침도 이러한 맥락에서 그 진의를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다.

교육의 1차적 주체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떨어뜨리는 한 학원의 민주화·자율화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는 교육 전문가들의 공통된 신념일 뿐 아니라 민주 사회의 상식이다. 대학 행정의 책임자인 총·학장의 선출·해임권은 재단이나 문교 당국에 일방적으로 주어질 수 없으며, 교육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만드는 재임용제·재계약제는 용납될 수 없다. 학문 외적·교육 외적 자유에 의한 지위 박탈 위협으로부터의 교수직의 신분 보장은 학원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선결 요건이며, 국민적 여론

과 교육자적 양심의 합의에 부합하는 총·학장의 직선은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최초의 실질적 장치이다. 문교부와 그 배후에 있어 온 악명의 기관, 한국사학재단연합회, 한국사립대학 재단협의회 등은 비정상적인 교육 외적·경제정치적 이해 관계를 지키기 위해 학생과 교수를 탄압해 온 비민주적 행태를 중지하고 이제부터라도 미래의 조국과 민족에 기여하는 참된 민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최소한 민주화의 흐름을 역류시키려는 비인간적 충동을 절제해야 한다. 대학교육협의회, 물론 총·학장단은 겨우나의 비리와 횡포를 감싸주려 했던 듯한 인상을 썼고 과거를 반성하며 교육자적 양심을 회복 또는 재창출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반성·절제·양심 회복은 무엇보다 먼저 교수 대의 기구의 합법적 제도화, 총·학장 직선 등 대학 자체의 추진, 지위 박탈과 양심 상실 위협으로부터의 교수의 신분 보장 등의 움직임으로 나타나야 한다.

3. 教授評議會는 民主的으로 구성되는 실질적 議決機關

교수 신분 보장과 총·학장 직선의 토대 위에 대학별 특성을 살리면서 지속적으로 펼쳐질 대학 운영의 자율화와 대학 문화의 창달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는 대의 기구로서의 교수평의회이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60여 개 대학의 교수평의회는 교육 관계법 개정 이전에도 문교부 또는 그 이상의 정부 당국에 의해 공개적으로 그 합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아직 교수평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대학은 조속히 교수의 총의를 수렴하여 그것을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교수평의회의 구성 방식과 기능 및 권한은 민주적 절차·방식에 따르는 한 각 대학의 실정을 감안한 그 대학 교수들의 일반 의사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재단과 문교부를 포함한 어떤 외부 세력도 교수평의회의 구성과 기능 수행에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다양한 특수 사정에 놓인 각 대학 교수평의회의 구성과 기능에 적용될 보편성 있는 일반 원칙은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편적 원칙의 테두리는 민

주주의의 일반 원리와 민주화의 대세 및 민주적 양심에 입각한 합리적 상식에 준거하여 설정될 수 있다.

교수평의회의 구성 방식, 곧 형식적·방법적 절차는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어야 한다. 민주화·자율화를 향한 개혁의 모든 과정은 교수 일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식과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의 기구의 결성을 위한 최초의 논의에서부터 그 기구의 본격적 운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국면에 있어서 협존 구조에서의 이해 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평교수들 가운데서 선출된 대표들이 그 진행을 주도해야 한다. 아무리 홀륭한 내용을 담은 개혁도 정당한 주체의 주도 없이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절차·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합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전교적 교수평의회를 구성하는 단대별 대표는 물론, 교수평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위원회의 대표도 보직 없는 교수들 가운데서 선출되어야 한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민주적 의사의 통합만이 실질적 자율화를 보장한다.

교수평의회는 교수 인사, 학교 재정, 학적, 교육과정 등을 포함한 대학 운영의 주요 사항 전반에 걸친 학교 수준의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그 집행 결과를 심사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대학 자치의 필수 요건으로 합의되고 있는 총·학장의 직선에 관한 규정은 각 대학(교)의 교수평의회에 일임되고 실제의 선출 과정 또한 교수평의회에 의해 관장되어야 한다. 다만, 총장 후보의 자격 요건은 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총장 후보의 자격을 일정 기간 이상의 교육 경력을 지닌 전·현직 교수로 제한함과 동시에 현재 교수 아닌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 총장은 그 직책과 상관없이 교수 자격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수의 임용과 면직 및 징계 등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교수평의회에 동의권 및 거부권이 주어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학과, 학교의 실정에 적합한 신규 교수의 임용, 무자격자·부적격자의 교수 임용 배제, 능력 있고 양심적인 교수의 부당 해직 방지 등 학문 발전과 대학 자율

화에 긴밀히 연관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예산·결산의 주요 사항은 교수평의회가 동의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획·집행·감사되어야 한다. 재정이 행정 책임자나 재단에 일방적으로 맡겨지고 비밀 속에 있는 한 대학 운영의 효율성이나 대학인 사이의 신뢰는 있을 수 없다. 학생의 입학과 졸업 및 징계 등 학적에 관한 사항 또한 교수평의회에서의 논의와 동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학생의 학업 능력과 시민적 자질을 건학 이념, 학과 특성, 지역 사정 등과의 관련 속에서 정확하고 효율성 있는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교수들이다. 인사, 재정, 학적 이외에도 교육과정, 수업, 성적, 정원, 시설 등 대학 운영의 주요 사항에 관한 일반 원칙의 결정과 변경은 교수평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학습을 통해 합리적인 사고력과 건전한 실천력을 갖춘 양심적인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가치관과 오도된 사회관을 심어 주는 혐행의 일방 주입식 교육을 청산하는 일과 가능한 모든 자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동원·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판단 역시 편의 위주의 관료적 처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수들의 사고 및 그 합의에 의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

4. 大學의 自治 運營은 모든 大學人의 參與로 가능

이같은 구성의 방법적 절차와 기능 수행의 내용적 범위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을 일상적으로 구현해 나갈 중심 주체 기구로서의 교수평의회의 합법적 제도화는 그러나 그것만으로 대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대학이 교수들만의 것이 아니듯 대학 민주화는 교수들만의 짐이 아니다. 학생은 학원의 주된 구성원이며, 특히 대학생은 많은 부분에서 법적 성인으로서 각종의 시민적 권리와 책임을 지닌다. 국가 사회의 민주화가 소수 반민주 집단을 제외한 범국민적 과제이듯이 대학의 민주화는 상당 부분 학생의 정당한 참여와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비자주적 교과과정과 교육 내

용, 자치 기구 및 씨를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 개인별 지도 교수제 등은 교수보다 학생의 권리·이익에 더욱 밀접히 연관될 수 있는 대학내의 제도적인 문제들이다. 사무 직원의 윌권이나 과외 금지 등 교육 의적·준제도적 역할도 학생들의 편에서는 실질적인 상대적 불이익을 준다. 학교 재정, 강의 시간 배정, 도서관 운영, 제반 시설과 복지 시책 등에 관해서는 학생들의 편에서 사전·사후에 알 권리와 일정한 수준에서 공통의 견을 표명하고 실제 운영에의 반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학생의 일반 여론이나 학생 대표의 의견을 수용할 제도적 장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정치적 관계나 '신분'에 대한 혼란된 관점이 상존하고 있는 현 단계 한국 사회의 분위기 그리고 대학 사회에서 학생이 겪는 피교육자적 위치로 보아 학생이 교수와 동등하게 학원 운영의 참여 주체로 기능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의결권을 갖지 않는 교수학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일정한 문제 영역과 범위 안에서 일정하게 제한된 자격으로 교수평의회나 교무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관·발언하도록 허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교수 사회에서의 여론에 따라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수의 학생 대표를 심의·결정권을 지닌 회의체에 등등한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도 있겠다.

대학 자율화는 또한 교수와 학생만의 부담 과제가 아니다. 이들과 더불어 학원의 삼각 구조를 이루는 사무 직원도 부담해야 할 역할이 있다. 대학에 있어서 사무 직원은 원칙적으로 교수와 학생에 대한 보조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그들이 교수와 학생보다 인격적으로나 신분상으로 하위에 놓인다는 의미를 표현하지 않는다. 학문의 전수와 학생의 인간적 성장이라는 대학 운영의 내부적 목표와 관련하여 사무 직원은 기능상 비당사적 입장 내지 부차적 위치에 선다. 그런 만큼 사무 직원은 교수와 학습이라는 1차적 대학 현상에 대해 교수나 학생에 우선하는 결정권을 지니거나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현재 실질적으로는 총장의 직접 지휘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 일정 부분 거의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대의 사무국은 명실상부한 총장의 예속 기구가 되어야 한다. 국립대의 경우 사

무국장을 비롯한 학교 행정 관료의 인사에 대해서는 총장이 실질적으로 총무처나 문교부에 우선하는 권한을 지녀야 한다. 적재 도표상 사무국장을 단대 학장보다 위에 그려 넣고 단과대 서무과장을 교수 보직인 교무·학생과장과 병렬시키는 관행에 숨은 관료주의적 대학 운영의 발상은 불식되어야 한다. 대학 행정의 실무 직원들은 그 보조적 위치를 자각하고 그에 상응하는 복무 행태를 보임으로써 대학인으로서의 인간적 평등과 신뢰 및 화목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무 직원들도 교수와 수업이라는 대학의 중심 기능을 밀받치는 일반 행정의 영역에서는 대학 운영의 합리화·효율화에 기여하고 사무적 노동자로서 사회적인 여러 권리들을 주장할 수 있는 통로를 누려야 한다. 요컨대 행정 직원들도 일정한 영역·수준에서 대학 사회를 구성하는 정당한 주체이다.

대학의 행정 계통과 관련하여 총장의 위치도 명확히 인식될 필요가 있다. 총장은 사무 직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휘 통솔권을 갖는 상부 기관이되, 교수·학생 위에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다. 더구나 교수 자격을 지니지 않는 현재의 행정 책임자로서의 총장은 교수들의 지도자일 수 없다. 대학은 전공별 학식을 체계적·조직적으로 배치시킨 바탕 위에서 수행되는 연구와 교육의 마당이지 총칼로 적을 죽이는 전투 목표에 복무하는 일사불란한 명령 계통의 지배 영역이 아니다. 총장은 강의와 학습 및 교수·학생 사이의 인간적 친애와 지도를 효율성 있게 뒷받치는 행정적 운영의 총책임자이다. 총장에 대한 존경과 신뢰는 제도상의 위치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업무 처리 방식과 인격에 대한 대학인의 자발적 심정의 발로일 때 진정한 것이 된다. 한편 우리 사회의 일반적 교직관에 비추어 총장은 10년 이상의 교수 경력을 지닌 인물로 그 피선거권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총장 재임종이나 그 이후에도 교수직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럴 경우 총장은 교수 사회에서 정당한 동료의 일원으로 대우받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대학의 비대학적 운영 관행은 보다 잘 극복될 수 있다. 스스로를 교수로서보다 문교부에 소속된 행정 기관장으로 의식·인식하

고 그러한 지위의 겸유 자체를 삶의 주요한 가치의 성취로 여기는 인물을 교수·학생 집단은 대학의 대외적 대표로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다. 행정 당국의 하수인 아닌 교수 사회의 민주적 대표로서 기능할 때 총·학장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대학 자율성을 넓혀 나가는 주체적 역할이 된다.

5. 大學 自律化는 學問과 批判의 自由에 基礎

자율 대학 건설의 꿈은 아직 꿈일 뿐 현실이 아니다. 민주 사회의 주체적 시민이요 사회적 책무를 절감하는 지식인으로서 공개적으로 수행한 합리적 관점·입장에서의 건설적 비판의 실천으로 인해 수 많은 교수들이 다양한 불이익을 받아 왔고, 6공화국에 들어 와서도 그러한 사례는 드물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특히 재단과 권력의 부당한 처분과 사법 당국의 부당한 판결에 따라 복직을 저지당하고 있는 교수가 적어도 5명이 있으며, 중등 교사의 경우 그 수는 수백 명에 이른다. 교수에 대한 불이익 처분, 학교 자금의 유출, 교수·학생에 대한 폭행 등 각종 부당 조치의 당사 주체인 일부 대학 총·학장, 재단, 정책 당국 및 그 배후 기관 등은 대부분 여전히 횡포와 비리의 구조 속에 온존하려 든다. 저들은 과거 부당 조치의 철회와 차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는커녕 오히려 반민주적 이해 관계의 옹호에 집착하고 있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 40만 교육자의 권익을 보호·신장하기 위해 설립된 大韓敎聯은 설립 목적과는 반대로 교육 주체에 대한 교육 권리·행정 권리의 보수적 지배를 약간의 개량을 통해 합리화하는 몸짓을 보여주고 있다.

학원 자율화를 이루려는 진보적인 민주 세력과 민주 교육의 확산을 두려워하는 파행 보수·반민주 세력들간의 투쟁은 최근 교육 관계법 개정의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전자가 성명, 단식, 농성 등 주로 공개적·개방적·대중적 운동으로 자신들의 비판적 의사를 표현하는 데 비해, 후자는 문교부와 정당을 비롯한 권력 유관 기관에 대한 비공개적·폐쇄적 로비

와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비민주적 기득권을 옹호하려 한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립대 교수협의회연합회’ 및 ‘민주 교육 추진 전국교사협의회’ 등 3개 민주 교육자 단체는 최근 들어 교육 관계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해 공청회, 대중적 결의 대회, 농성, 단식, 관계 기관 방문, 공동 성명 등 다양한 활동에서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88년 국회 회기 이내에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 흐리다는 점, 야권 3당이 교육 민주화의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보다는 학교 금력·정부 권력과의 타협을 통해 보다 큰 경제적·당략적 이익을 획득하려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신문 등 대중 언론 매체들이 민주 교육 3단체의 교육법 개정 시안들이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으며, 3단체가 서로 다른 집단적 이해 관계를 지닌 것처럼 어느 정도 고의적인 여론 오도를 범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수준 높은 투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단일 현재의 전망대로 보수 기득권 계층 집단이 교육 관계법의 비민주적 요소를 잔존시키는 법안 처리를 강행하게 될 때, 그들은 학계·교육계를 비롯한 광범한 지식인 계층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교육 관계법의 민주적 개정 운동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원리적 요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신념에 그 의식적 원천을 두고 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자기 실현과 사회의 진전한 발전을 위한 기본적 기초이다. 경제 개발, 정치 안정, 기술 진보, 문화 창달 등 각종 사회·문화적 가치는 개방적이고도 엄밀한 학문적 탐구와 그 결과의 사회적 공유를 통해서만 성취된다. 학문 연구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의 중심부에 자리하며 언어적·행위적 비판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현실적 핵심이다. 가능한 모든 국민이 합리적 사고와 비판적 양심을 지닌 건전한 인격을 지니고, 그리하여 과거를 계승·극복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건강하고 진보적인 사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학문과 비판의 자유 보장과 그 기반 위에 성립하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문화 전승 양식으로서의 교육의 자율성의 확

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대학과 일반 사회는 서로가 주고 받는 상보적 관계에 있다. 연구와 교수라는 대학 교수의 1차적 기능 수행, 연구 결과의 기술적·현실적 적용 그리고 학문의 사회적 기여의 한 형태로서의 현실 비판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강의실에서의 학문적 견해의 표명이나 저술을 통한 학설의 제시에 대해서는 사법적 대응을 포함한 어떤 제약도 가해져서는 안 되며, 비판적 지식인으로서의 교수의 사회적 발언은 공동체적 발전을 위한 충정어린 조언으로 받아 들여져야 한다. 성인·시민으로서의 학생의 언행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수용되어야 한다. 학문과 비판의 자유로운 발전은 국가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의 무한한 발전을 기약하는 초석이다. 대학의 자율화는 민주·평등·자주의 통

일된 민족 공동체의 건설이라는 현 단계 한국의 역사 상황에서의 총체적 주체 운동의 과업에 통합되는 부문적·요인적 운동 과제이다.

교수협의회 또는 그 실질적 대표 기구로서의 교수평의회의 법제화에 초점이 맞춰지는 대학 자율화의 과제는 분단 의식에 고착된 정부 권력이나 보수 정당 및 대기업적 자기 확대 욕구로 충만된 제단의 연합적 음모를 범국민적 민주화의 지의 체계와 형식을 주는 비판적 실천의 동력을 통합을 통해 깨뜨리는 작업이고, 각종 기관이나 일부 보수 편향의 유지급 동창 및 학부모의 간섭을 배제하는 운동이며, 직선 총장을 포함하는 교수·학생·행정 직원 등 모든 대학인이 民主化·自律化를 이루해 나아가는 민중 운동 흐름의 한 가닥을 형성함으로써 성취해야 할 당면 목표이다. *